[별지10] 대출거래추가약정서(연계형 보금자리론의 전환특약 이행 시)

(개정 2021.09.15, 시행 2021.09.27.)

담 당	팀장	부점장

대 출 거 래 추 가 약 정 서

(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유동화목적 보금자리론용 - 연계형, 전환특약 이행 시)

주식회사 앞 년 월 일

본인 (인)

위 본인은 년 월 일자 "대출거래약정(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유동화목적 보금자리론용 - 연계형)"(이하, "대출거래약정") 제9조에 따라 본 대출거래추가약정(이하, "추가약정")을 체결하기로 하며, 이 추가약정에 의하여 대출거래약정의 대출조건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합니다.

거래조건의 변경

<table>
<tr><th>거래조건</th><th>변경 전</th><th>변경 후</th></tr>
<tr><td>전환(예정)일</td><td>년 월 일</td><td>년 월 일</td></tr>
<tr><td>대출만료일</td><td>년 월 일</td><td>년 월 일</td></tr>
<tr><td>상환방법</td><td>1. 대출만료일에 금 원(대출금액의 % 상당금액)을 상환합니다.
2. 위 1항 외의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, 전환특약이행일로부터 ( )년 동안 거치 하고 응당일인 ( )년( )월( )일부터 매 1개월마다(□원리금균등 □원금균등 □체증식) 분할상환합니다.</td><td>1. 대출만료일에 금 원(대출금액의 % 상당금액)을 상환합니다.
2. 위 1항 외의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, 전환특약이행일로부터 ( )년 동안 거치 하고 응당일인 ( )년( )월( )일부터 매 1개월마다(□원리금균등 □원금균등 □체증식) 분할상환합니다.</td></tr>
<tr><td>이자율</td><td>( )%</td><td>
<table>
<tr><td colspan="2">고시금리</td><td>· 대출만료일까지 연 ( )%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우대금리</td><td>사회적 배려층 (최대 2개 선택가능)</td><td>□ 한부모가구 0.4%p
□ 장애인가구 0.4%p
□ 다문화가구 0.4%p
□ 다자녀가구 0.4%p
□ 신혼가구 0.2%p</td></tr>
<tr><td>미분양 주택 입주자</td><td>□ 미분양 주택 입주자 0.2%p*
* 사회적배려층 우대금리와 중복하여 최대 0.8%p 내 적용가능</td></tr>
<tr><td>추가우대 (중복적용 가능)</td><td>□ 전자약정 및 전자설정 0.1%p
□ 가족사랑 우대금리 0.1%p
□ 서민우대프로그램 우대금리 0.1%p
□ 금리우대 쿠폰 0.02%p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가산금리</td><td>□ 투기지역 0.1%p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최종적용금리</td><td>· 대출만료일까지 연 ( )%</td></tr>
</table>
</td></tr>
<tr><td>지연배상금률</td><td>· 연체기간이 ( )개월 이하인 경우 연 %
· 연체기간이 ( )개월 초과한 경우 연 %</td><td>· 원리금 또는 이자가 연체중인 경우에는 '납입지연된 원리금상환(예정)액'에 대해 연체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연배상금을 부과합니다. 다만, 본 약정 제2조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'총 대출잔액'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부과합니다.
- 연체기간 3개월 이내 : '약정이자율'+연 2%
- 연체기간 3개월 초과 : '약정이자율'+연 3%
- 단, 지연배상금(연체이자)률이 연 12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2%를 적용</td></tr>
<tr><td>조기상환 수수료</td><td>대출만료일전 상환하는 경우에는 조기상환금액에 ( )%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니다.</td><td>이 추가약정체결일로부터 조기상환원금 × 조기상환수수료율 ( )% × [(3년 - 대출경과일수)/3년]으로 계산하여 부과합니다.</td></tr>
<tr><td>약정납일일</td><td>( )일</td><td>( )일</td></tr>
</table>

* 채무자는 이 약정 체결 이후 납입일을 1회에 한하여 변경 하실 수 있습니다. 원리금 납입일을 변경할 경우 첫 납입기일은 변경전 최종 이자계산일(전회차 납입일)로부터 1개월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경된 납입일로 합니다.